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
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51조제2항에 의거 '의왕 철도 특구'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15년 1월 7일중소기업청장

경기 의왕 철도특구 계획변경

1. 특구계획 변경목적

○ 특화사업(왕송호수 공원조성사업)의 세부사업인 레일바이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선길이 조정, 시행방법 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비 및 세부사업 기간 변경을 통하여 특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
2. 특구계획 변경사항

- 특구명칭/ 특구위치/ 면적/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/ 사업기간 : 변동없음
- 투구사업비: (당초)2,296억원 → (변경)2,254억원(42억원 감액, 1.8%↓)
 ※ 레일바이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체 사업비 변경
- 재원조달방법
 - (당초) 총사업비 2,296억원(국비 112, 도비 70, 시비 240, 민자 1,874)
 - (변경) 총사업비 2,254억원(국비 112, 도비 70, 시비 247, 민자 1,825)

- 시행방법
 - (당초) 특화사업자인 의왕시장이 직접시행하고,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레일바이크설치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·시행
 - (변경) 특화사업자인 의왕시장이 직접시행하되,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·시행하고, 레일바이크사업의 기반시설은 의왕시장이 설치하고, 궤도공사, 레일바이크 제작, 꼬마기차(순환열차), 운영시설 등은 민간사업자(필요시 민간 운영법인 설립)가 설치·운영
- 기타 세부사업계획 내용 변경

<레일바이크 사업>

- 기 간 : 당초) 2011~2014 → 변경) 2011~2015

- 노선길이 : 당초) 5.3km → 변경) 4.3km(1.0km 단축)

※ 실시설계과정에서 노선의 연장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

- 사 업 비 : 당초) 19,232백만원 → 변경) 15,000백만원(4,232백만원 감) ※ 재원부담 : 당초) 시비 9.616 민자 9.616 → 변경) 시비 10,349 민자 4.651

<왕송호수 환경정비 사업>

- 기 간 : 당초) 2011~2015 → 변경) 2011~2017

- 3. 규제특례사항 : 변동없음
- 4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: 변동없음
- 5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 -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: 042-481-1616, 1617) 또는 경기도 의왕시 철도특구과(Tel: 031-345-3072)에서 열람할 수 있음